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이 자료를 통하여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정수봉
전화 062-231-4302 팩스 062-231-4744

보도자료 2019. 6. 17.(월)

자료문의 : 강력부장실
전화번호 : 062-231-4320
주책임자 : 부장검사 김호삼

제 목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범’ 및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사범’ 수사결과

- 총 41명 적발, 8명 구속기소, 17명 불구속기소 등 -

-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5개월여에 걸쳐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범’과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한 결과,

 -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도금 약 300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 등 총 16명을 인지**하여, 그중 **4명을 구속기소**, 11명을 지명수배, 1명을 기소유예 하고
 - **범죄수익환수와 관련하여, 현금 약 9,200만원과 시가 5,2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압수**하였으며, 상가건물, 가상화폐 등 **7억 9,2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음
 - 더불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31개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106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4억 3천만원을 수수한 대포통장 판매업자 1명을 포함하여 **대포통장 판매업자 24명 등 총 25명을 인지(유령법인 43개, 대포통장 183개, 범죄수익 약 10억원)**하여 **4명을 구속기소**, 17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지명수배, 1명에 대하여 이송하고
 - 향후 유령법인이 또다시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자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총 43개**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의뢰함

I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범

1 주요 범죄사실 요지

- A, B, C, D 등은 공모하여 '17. 9. ~ '18. 12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개설·운영하고, 대포통장으로 도금 약 300억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 은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피의자별 구체적 범죄사실은 별지 1 참조

2 수사경과

- 중국 등에 도박사이트 개발실을 갖추고, 도박사이트 100여개를 제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한 도박사이트 제작업자 등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B를 구속하고, 본건 수사진행

* 광주지검 강력부는 2018년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자·운영자·서버임대업자 등 도박사이트 전반을 수사하여 총 28명을 인지하여 19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기소, 4명을 지명수배 하였음

- 2018. 12. 31. B 구속

- 2019. 1.~5. ① 본건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대포계좌 등 총 48개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② B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호실, C의 주거지 등 14곳 압수수색, ③ B가 사용한 휴대전화 등 휴대전화 16개에 대해 통신영장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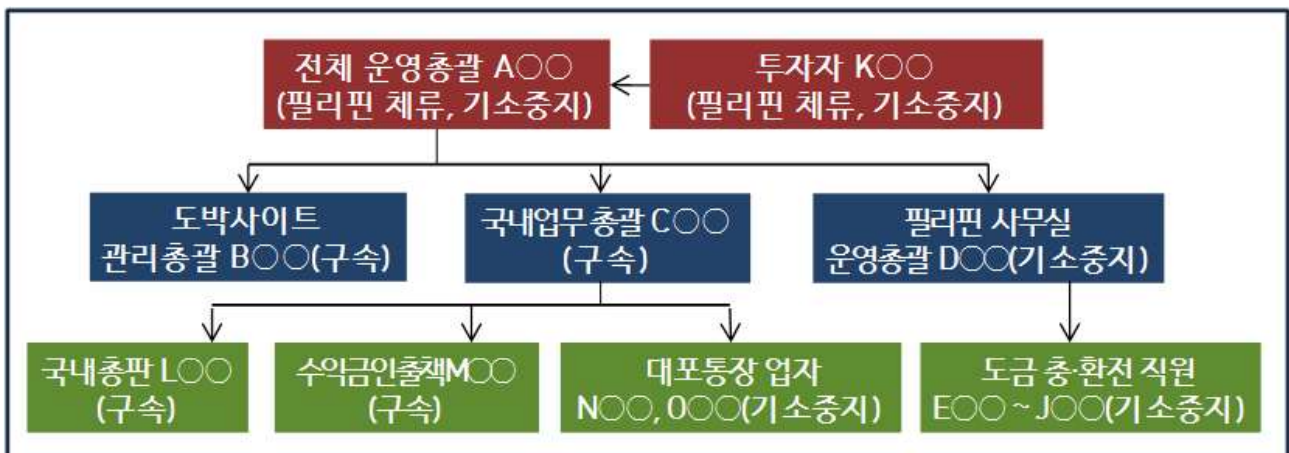
3 수사결과

가. 다양한 수사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실체 규명

- 최초 구속된 주범 B는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관련증거를 인멸한 후, 가공의 인물을 주범으로 내세우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함

- 이에 '계좌추적', '모바일 분석', '주거지, 교도소 호실 압수수색' 등 다양한 수사방법을 사용하여 B가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범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압수된 B의 서신을 통하여 다른 공범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이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함
- 체포된 공범들을 통하여 본건 도박사이트가 '전체 운영총괄', '투자자', '사이트 관리총괄', '국내 업무총괄', '필리핀 사무실 운영총괄', '국내총판', '수익금인출책', '대포통장 업자', '도금 충·환전 직원'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조직적으로 운영된 사실을 규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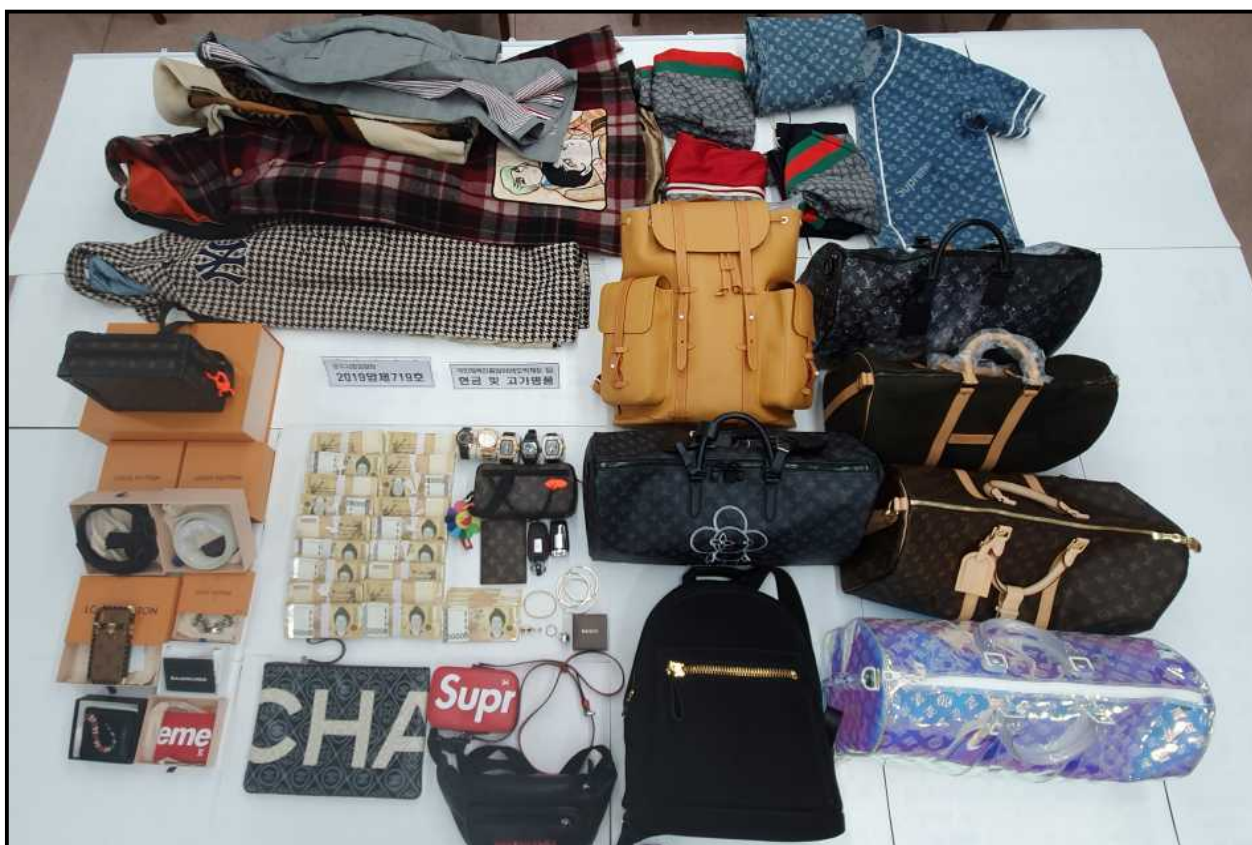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도]



나. 범죄수익 환수조치

- 수사초기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여 현금 약 9,200만원과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시가 5,2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11점), 명품의류(42점) 등을 압수하고, 5억 3,000만원 상당의 상가건물, 2억 5,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615,000엔(한화 약 6,715,246원), 1,000달러(한화 약 152,170원), 가상화폐 이더리움 21개(약 600만원) 등 약 7억 9,2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함

[압수한 현금, 명품시계 · 가방 · 의류 일부]



II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사범

1 주요 범죄사실 요지

○ 피의자 A는 '17. 8. ~ '19. 2.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하고, 피의자 또는 지인들 명의로 설립된 유령법인 31개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106개를 모집하여 이를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 4억 3천여만 원을 수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의자별 구체적 범죄사실은 별지 2 참조

2 수사경과

○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만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

○ 2018. 12. 10. 대포통장 개설자 D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송치

- ※ D는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였고, 대포통장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
-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여부 조회하여 D가 대표자로 다수의 법인을 설립한 사실 확인 후, 유령법인 5개 설립, 유령법인 대포통장 17개 양도한 혐의 추가로 밝혀 인지

○ 2019. 2. 20. D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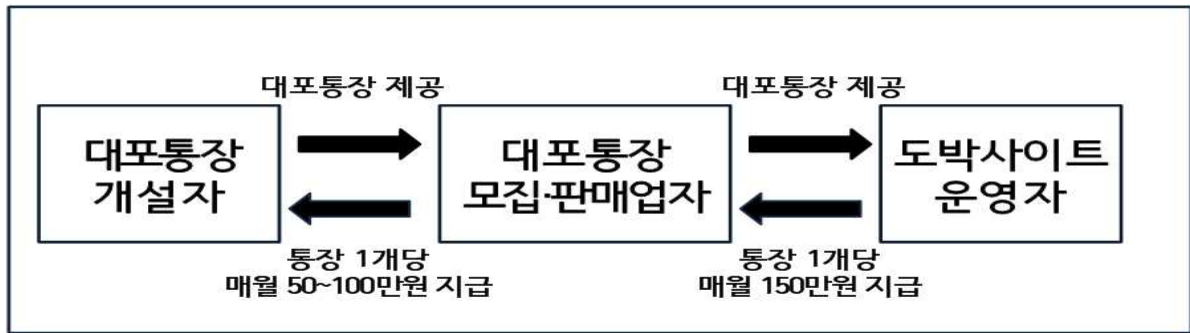
- 2019. 2.~5. ① D 명의의 계좌분석을 통하여 D가 유령법인 설립 시 필요한 허위예금잔고증명서 발급 등의 과정에서 A와 공모한 증거를 확보하여 A를 구속, ② A의 휴대전화, USB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A가 B, C로부터 일부 대포통장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B, C를 인지 및 각 구속, 대포통장 개설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

③ 수사결과

가. 유령법인 대포통장 발급 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필요

-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개설방지를 위해 개인 명의 계좌개설의 경우 신용불량자나 구체적인 금융거래목적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추가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인출한도를 소액(30만원)으로 제한하는 반면, 법인 명의의 계좌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과 무관하게 법인 관련 서류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제출만으로 다수의 계좌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시키고 있음을 확인함
- A 등 대포통장 모집·판매업자들은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유령법인 대포통장의 계좌를 새로 발급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기존계좌는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 총 183개를 유통시킴

[유령법인 대표통장 유통구조]



-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유령법인 대표통장이 최근 급속도로 대량으로 유통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본건 피고인 전부에 대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 구공판을 함

나. 범죄수익환수 및 법인말소 조치

- 대표통장 모집·판매업자인 C□□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승용차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하였고, 향후 추적·발견될 재산과 관련하여 우리청 범죄수익환수 담당부서에 피고인 전부에 대한 범죄수익환수를 의뢰함
- 유령법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대표자를 변경하고 새로이 유령법인 대표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피의자들이 설립한 유령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의뢰함

III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광주지검은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범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표통장 유통사범 근절을 위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임
- 특히,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총괄하는 주범 등을 검거하여 그 뿌리를 뽑기 위하여 외국과의 사범공조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계획임.

별지 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범 피의자별 범죄사실]

순번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비고
1	A○○ (37세, 도박사이트 전체 운영총괄)	▶ 공모하여, '17. 9.~'18. 12.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고, 대표통장으로 도금 300억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 은닉함[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 5. 31. 기소중지(지명수배)
2	B○○ (27세, 도박사이트 관리총괄)		'19. 1. 16. 구속기소
3	C○○ (26세, 국내업무 총괄)		'19. 5. 23. 구속기소
4	D○○ (27세, 필리핀 사무실 운영총괄)		'19. 5. 31. 기소중지(지명수배)
5	E○○ (33세, 실장)		"
6	F○○ (36세, 실장)		"
7	G○○ (27세, 실장)		"
8	H○○ (29세, 실장)		"
9	I○○ (24세, 팀장)		"
10	J○○ (29세, 직원)		"
11	K○○ (35세, 투자자)		"
12	L○○ (27세, 총판)		'19. 4. 10. 구속기소
13	M○○ (28세, 수익금 전달)		'19. 5. 8. 구속기소
14	N○○ (34세, 대표통장 업자)		'19. 5. 31. 기소중지(지명수배)
15	O○○ (32세, 대표통장 업자)		'19. 5. 31. 기소중지(지명수배)
16	P○○ (여, 56세, 통장대여, B○○의 모친)		▶ 아들인 B○○에게 통장을 빌려주어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게 하고, B○○ 구속 후 공범 L○○에게 잠적하라고 함[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별지2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사범 피의자별 범죄사실]

순번	피고인	역할	공소사실 요지	처분
1	A□□ (남, 35세)	대포통장 모집 및 판매업자	▶ 유령법인 3개 설립, 대포통장 14개 개설 ▶ '17. 9. ~ '19. 2. 자신 및 지인들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 31개 명의의 대포통장 106개를 불상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4억 3,000만원 수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9. 3. 26. 구속기소
2	B□□ (남, 38세)	"	▶ 유령법인 6개 설립, 대포통장 38개 개설 ▶ '17. 9. ~ '19. 4. 자신 및 지인들 명의로 설립된 유령법인 7개 명의의 대포통장 40개를 불상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억 6,500만원 수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9. 5. 23. 구속기소
3	C□□ (남, 25세)	"	▶ 유령법인 1개 설립, 대포통장 4개 개설 ▶ '18. 9. ~ '19. 3. 자신 및 지인들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 10개 명의의 대포통장 37개를 불상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 수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9. 4. 24. 구속기소
4	D□□ (남, 35세)	대포통장 판매자 (개설자)	▶ 유령법인 1~5개 설립, 대포통장 2~17개를 개설하여 A□□, C□□에게 양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9. 3. 6. 구속기소 ※ 징역 10월 선고
5	E□□ ~ T□□ (16명)	"		'19. 6. 3. 불구속 구공판
6	U□□ (남, 24세)	"		'19. 6. 3. 이송 ※ 목포지원 별건 재판 중
7	V□□ ~ X□□(3명)	"		'19. 6. 3. 기소중지 (지명수배)
8	Y□□ (남, 27세)	유령법인 명의자		▶ 유령법인 1개 변경등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